##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2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김장겸·강승규·서일준

권성동・조정훈・서천호

구자근 · 김예지 · 엄태영

김승수 · 최수진 · 박정하

유상범 • 이철규 • 박성민

강선영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 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번 생산되면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된다는 특징을 가짐.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허위조 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 게 되므로 이에 대한 유통방지 대책 마련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U는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고, 독일은 지난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 야 할 의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의무 등을 부과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포함시키며,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의무· 책임자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거나, 과태 료를 부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효 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제44조의4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허위조작정보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및 제6호의3의"를 ", 제6호의3 및 제6호의4의"로 한다.

6의4. 허위조작정보

제5장에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 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

- 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허위조작 정보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관하 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에는 누구든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 여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4조의2제1 항 후단,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해당 조치의 내용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제2항 또는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① 그 밖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12(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는 제44조의11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유통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불법촬영물등의"를 각 "불법촬영물등 및 허위조작정보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책임자의"를 "책임자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통방지를"을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허위조작정보의 임시조치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제7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2.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를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

는 정보를 유통한 자

제7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4조의11제6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자

제76조제2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44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 제2조(정의) ①              |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14.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     |
|                      | <u>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u> |
|                      | 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       |
|                      | 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        |
|                      | 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
|                      | 정보를 말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생 략) |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현행과    |
|                      | 같음)                    |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 2                      |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                        |
|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                        |
|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      |                        |
| 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3. 허위조작정보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 <u> 등</u> ) ①          |
|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3. (생략)

<신 설>

7.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신 설>

| 1. ~ 6의3. (현행과 같음) |
|--------------------|
| 6의4. 허위조작정보        |
| 7. ~ 9. (현행과 같음)   |
| ②                  |
|                    |
| 제6호의3 및 제6호의4의     |
|                    |
|                    |
|                    |
|                    |
|                    |
|                    |
|                    |
|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 세44조의11(허위조작정보의 유통 |
| 방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   |
| 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    |
| 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
| 이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    |
| 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서는    |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허위조작정보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통하여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44조의2제1항 후 단,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정보게재자에게 해당 조치의 내용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제2항 또는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있다.

⑦ 그 밖의 허위조작정보의 유 통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2(허위조작정보 유통방

<신 설>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 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 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

지 책임자) ① 제44조의11제2 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 기 위한 책임자(이하 "허위조 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 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 임자는 제44조의11제3항, 제4항

- 및 제5항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의 삭제・임시조치 등 유통방 지 등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 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허위조 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 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 등) ① -----

- 여 유통되는 <u>불법촬영물등의</u>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 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u>불</u> 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 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 2. · 3. (생략)
-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u>책임</u>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 5. 불법촬영물등 <u>유통방지를</u>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u><신 설></u>

②・③ (생 략)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 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 <u></u> 불법촬영물등 및 허 |
|--------------------|
| <u>위조작정보의</u>      |
|                    |
|                    |
|                    |
|                    |
| ·.                 |
| 1불                 |
| 법촬영물등 및 허위조작정보     |
| 의                  |
|                    |
| 2.·3. (현행과 같음)     |
| 4 <u>책임</u>        |
| 자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
| 책임자의               |
| 5 <u>및 허위조작정</u>   |
| <u>보 유통방지를</u>     |
|                    |
| 6. 허위조작정보의 임시조치 등  |
| 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  |
| 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
| <u>사항</u>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세71조(벌칙) ①         |
|                    |
|                    |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11. ~ 14. (생략)

② (생 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 8. (생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 ·.                          |
|-----------------------------|
| 1. ~ 10. (현행과 같음)           |
| <u>10의2.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u> |
| 를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에              |
|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              |
| 11. ~ 14.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
| 제73조(벌칙)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
| 5의2. 제44조의11제6항에 따른         |
|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              |
| 행하지 아니한 자                   |
| 6. ~ 8. (현행과 같음)            |
| 제74조(벌칙) ①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3의2.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         |
| 하여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             |
| 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              |
| 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             |
| 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              |

으로 게재한 자

4. ~ 7. (생 략)

②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의4.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 4  | $\sim$ | 7 | (현행과       | 간을)       |
|----|--------|---|------------|-----------|
| ┰. |        |   | \ 1' 0 - 1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2 | <br> | <br> | <br> | <br> | <br> | - |
|---|------|------|------|------|------|---|
|   | <br> | <br> | <br> | <br> | <br> | _ |
|   |      |      |      |      |      |   |

 1. ~ 4의4. (현행과 같음)
4의5. 제44조의12제1항을 위반 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③・④ (현행과 같음)